

# 예 산 총 칙

201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95,994,284	5,879,829
일반회계	187,270,116	5,618,103
특별회계	8,724,168	261,725
기타특별회계	8,724,168	261,72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55,152	13,655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247,524	7,426
주차장특별회계	7,322,401	219,672
지하수관리 특별회계	685,386	20,562
기반시설 특별회계	13,705	41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871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5,700,000천원 이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